

의안 번호	1803	【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1. 8. 20.(금)
- 제출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8. 20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9. 7.(화)

2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의 사용료 징수, 사용자 수칙 등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 범위, 명칭 및 소재지(안 제3조~제4조)
- 관리·운영(안 제5조)
- 사용료 및 사용예약 등(안 제6조~제9조)
- 사용시설 양도 금지 및 사용자 수칙 등(안 제8조~제15조)
- 위탁관리(안 제16조)

4. 근거법규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제2항
 -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제2항
 -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